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780호
- 다. 발의일자 : 2019. 7. 2
- 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

2. 제 안 사 유

-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후 외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해제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살수 등의 세척조치를 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함.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살수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력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,
「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에 잔류하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세척 등의 조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현황

1)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

- 현행 조례 제12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·노인 등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)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¹⁾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해당 부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는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"취약 계층"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 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 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,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4조(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
2. 옥외 근로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

1) '19.3.28 신설

2)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관리

-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함)」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 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하고 2019년 6월 30일 현재 8,691 개소가 있으며,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1,111개소에 달하고 있음.
-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“관리주체”는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되어 있음.

영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항목에는 청결상태가 포함되어 있음.

다. 검토의견

1) 어린이놀이시설 세척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제3항)

-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이후 “어린이놀이시설”에 잔류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의 조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있음.

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,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을 위한 살수차 임차 및 운영 등으로 인해 연간 16억 2천1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

시설(1,111개소)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-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²⁾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다량의 미세먼지가 잔류할 것이므로 단지 비상저감조치 발령·해제³⁾ 이후에만 세척 등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, 동절기 살수(撒水)로 인한 시설 결빙, 인력 및 장비 확보⁴⁾ 문제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청결 상태 점검·유지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무⁵⁾ 등에 비추어 안 제12조제3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또한, 지원 대상⁶⁾이 다양하고 개별 조례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세척 등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⁷⁾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아닌 안전총괄실⁸⁾ 일반예산 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.

2) 당일 16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$50\mu\text{g}/\text{m}^3$ 를 초과하고 다음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.

3) '16년 6회, '17년 6회, '18년 5회

4) 살수차 543대, 임차비용 49만원/일·대

5)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정성 문제

6)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환경미화원등 옥외근로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

7) 연평균 16억 2천1백만원 소요 예상(6회/년 세척 기준)

8) 안전총괄실과 어린이놀이시설 세척 및 예산 지원에 관한 협의 없음

[관련법령]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제15조(안전점검 실시)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·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
제11조(안전점검 실시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
[별표 6]

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(제11조제2항 관련)

1. 안전점검의 항목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(老朽) 정도
- 다.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
- 라.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**
- 마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
- 바.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

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어린이놀이기구"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"어린이놀이시설"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3. "관리감독기관의 장"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4. "관리주체"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